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 번	안 호	286
--------	--------	-----

제출년월일 : 1997.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의 정당성·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함.

□ 주요골자

- 가. 파주시의 재정운영 상황은 상반기에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사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및 주요사업내역등을 매년 각각 공개하며 또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등의 사유로 사무인계인수시 인수받은 재정사항을 공개함. (제3조 제1항, 2항, 제5조)
- 나. 주민공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함. (제4조 제1, 2항)
- 다. 미확정된 사업등 정책에 관한사항, 공사·제조·구매등 입찰에 관한 기밀사항, 기타 국가재정, 경기도·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 제한(제6조)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의 재정 운영 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횟수) 재정운영 상황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 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재정운영 상황은 시보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되 공개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재산조서

2. 채권채무조서

3.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4.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5.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6. 적립금조서

7.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8. 보조금 수지현계표

9.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10. 기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민공개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4章 地方財政・地籍

第1節 地方財政

●地方財政法^(1988.4.6) 〔法律第4006號全文改正〕

改正 1990.12.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1.12.31 法律第4466號
1994.12.22 法律第4795號
1995.1.5 法律第4868號(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및 會計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하여 地方財政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管理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國家의 政策에 반하거나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부당한 影響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內務部長官은 地方財政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研究・開發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1. 합리적・효율적인 豫算管理技法
2. 地方財政運營狀況의 測定技法
3. 기타 國家의 실효성있는 地方財政支援方案

第3條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①各 會計年度의 經費는 당해年度의 歲入으로 充당하여야 한다.

②당해年度내의 收入으로 經費를 充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年度의 收入을 앞당기어 이에 充당・사용(이하 “繰上充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繰上充用을 한 金額은 다음 年度의 歲入歲出豫算에 編入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繰上充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繰上充用을 한 때에는 市・郡 및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에 있어서는 特別市長・直轄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特別市・直轄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歲入과 歲出의 會計年度 소속구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出納閉鎖期限) 地方自治團體의 出納은 會計年度 종료후 2月로 閉鎖한다.

第5條 (會計의 구분)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운영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歲出로서 一般歲入・歲出과 구분하여 經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律 또는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추 59)

第12章 補 則

第117條 (帳簿의 비치와 보고등) 會計關係公務員과 地方自治團體의 金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所管事務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18條 (財政運營에 관한 보고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報告書를 內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②內務部長官 및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分析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指導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석결과 財政의 健全性和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財政診斷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公開할 수 있다. <改正 94.12.22>

第118條의2 (地方財政에 대한 特別財政支援등) 內務部長官은 현저하게 落後된 地域의 開發이나 각종 災害로 인하여 특별한 財政需要가 있다고 판단되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전국에 걸쳐 施行하는 國家施策事業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따로 財政支援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12.22)

第118條의3 (財政運營狀況의 公開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마다 1회이상 歲入·歲出豫算의 집행상황, 地方價 및 一時借入金의 現在額, 公有財産의 증감 및 현황, 重要物品의 증감 및 現在額 기타 財政運營에 관한 중요사항을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4.12.22)

第119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5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金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지정된 地方自治團體의 金庫는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財産의 사용·收益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증전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행한 財産에 관한 사용·收益許可 기타 契約의 체결은

(후 56)

○○광역시 (도)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예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의3의 규정에 의한 시 (도)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시장(도지사)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에의 제한) 시장(도지사)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도지사)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도지사)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